

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02. 14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2. 13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02. 13

라. 상정일자 : 2014. 02. 14(제213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오병집 안전행정국장
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
- 질의 및 토론
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행정구역 개편 사항 반영
-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부 광역의원 선거구 변경사항 및 기초의원 총정수 변동사항 반영
-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간 의원 1인당 인구편차 심화 및 인구대비 구별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의 확정(안)에 따라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함[조례 제2조 별표]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「공직선거법」 개정(2014. 2. 6)에 따른 「인천광역시 선거구 확정위원회」의 확정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주요 개정요인은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자치구·군 의회의원 정수가 112명에서 116명으로 4명 증원되고,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동의 분동 및 신설과 시의원 선거구 1개(30개 → 31개) 증가에 따른 것이며

❖ 구별 분동 및 신설 내역

- 중 구 : 영종동 분동 → 영종동, 운서동
- 연수구 : 송도동 분동 → 송도1동, 송도2동
- 남동구 : 논현고잔동 분동 → 논현고잔동, 논현2동
- 서 구
·청라동 신설·분동 → 청라1동, 청라2동
·검단1동 분동 → 검단1동, 검단5동

-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간 의원 1인당 인구편차와 구·군별 의원 정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주요 개정사항은 구·군 의원정수는 남구 1명 감원, 연수구 1명 증원, 남동구, 서구 각 2명 증원하였고 중구, 남구, 연수구, 부평구, 서구에 각 1개의 4인 선거구를 채택하여 기존 40개 선거구에서 37개 선거구로 조정하였음.

❖ 의원정수별 선거구수 변화

- 2인 선거구 : 기존 23개 → 조정 15개 (8개소 감)
- 3인 선거구 : 기존 17개 → 조정 17개 (동일)
- 4인 선거구 : 기존 0개 → 조정 5개 (5개소 증)

- 검토의견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3조에 의거하여 자치구·군 의원정

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,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.

❖ 공직선거관리 규칙(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) 제4조 제1항 제1호

○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총정수 범위내에서 자치구·시·군별 인구비율과 읍·면·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- 또한, 동법 제26조에서 자치구·군의원 지역구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·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확정하되, 한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
- 시·도 조례로 자치구·군 의원지역구의 명칭, 구역, 의원정수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4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바,
- 금번 개정안에 있어서 각 자치구·군 의원지역구내 변경구역과 의원정수가 조정된 구역의 확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, 아울러, 4인 선거구 확정기준에 대한 설명 및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이상철 위원>

- 중구 가 선거구에서 1명 빼서 나 선거구를 4인으로 하였음. 지역 여건상 이치에 맞지 않음. 현행대로 각 선거구를 3명씩으로 하는 것이 맞음.
- ⇒ 영종, 운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, 4인으로 확정
- 중앙에서 시 의원 선거구 확정시 지역 여건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음. 또한, 기초의원 활동 수요는 구 시가지가 더욱 많음.

<홍성욱 위원>

-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의회의 권한에 대한 홍보가 되지않아 오해의 소지 발생하므로 확인 필요.
- 선거구 획정위에서 의원정수 획정 기준비율을 인구수 7, 동수 3으로 함. 부평, 남구 등 과거 인구밀집 시절에 동이 많이 생겼음. 그러나 인구수 감소에 따른 동 통합이 미진한 실정으로 기준에 불합리한 면 있음.
⇒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인구수와 동별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.
- 계양구 나선거구, 종래 의원 3명이나 개정안에서는 2명으로 줄어 1인당 의원수가 오히려 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구로 만듦.
⇒ 유독, 그 선거구만 늘어나게 되었는데 유감스러운 사항임.
- 이러한 개악을 그렇다고 의회에서 부결할 수 없는 실정. 의회에서 부결하면 우리시 선거구 획정 권한이 중앙선관위로 넘어 가게 됨.
⇒ 선거구 일정 등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람.
- 4인 선거구 5개 늘어난 것은 좋다고 봄. 우리 정치 지형에 맞다고 생각 함.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완화한 성과 있었으나 계양구 나선거구 획정사항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.

<류수용 위원>

- 홀수로 획정된 구는 괜찮은데, 남구 등은 짝수 의원수로 가부동수 일때 부결 가능성 많아짐. 의사결정시 어려움 유발될 수도 있음.
⇒ 깊은 면까지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지 못 하였음.

<최용덕 위원>

- 남구는 유일하게 1명의 의원정수가 감원, 매우 안타까운 사실임. 어느 기준으로 결정되었는가?

⇒ 선거관련 법이나 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획정하다보니 불가피하게 감소하게 됨.

○ 인천광역시는 인구수가 늘음. 상응하여 기초의원수가 늘어나야함. 남구는 대표적 원도심으로 고층 아파트 없고 저층 주거지가 대부분으로 오히려 일꾼이 더 필요한 지역인데 감원하는 것은 옳지 않음.

⇒ 다른 지역도 인구수가 많아 불가피하게 조정

○ 지역에서 싸우기 보다 힘을 합쳐 중앙정부 등에 정수 증원 요구해야 함.

⇒ 이번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인천은 의원수가 늘어난 것임.

○ 남구 갑구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맞고, 연수구도 종전대로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

<이용범 위원>

○ 인구 늘어나며 4명 의원이 늘었지만 각 지역별 인구편차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의원정수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을 건의해야 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이용범, 차준택, 최용덕, 류수용, 이상철, 홍성욱 위원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❖ 수정가결 내용

○ 중구 의원정수를 현행과 같이 하고, 남구 가, 나 선거구를 현행 남구 가, 나, 다 선거구와 같이 의원정수와 지역구를 수정함.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

1. 수정안 1부.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3. 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 한다.

[별 표]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 신·구 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	수정안			
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명	선출인원		
	계	비례	지역구		계	비례	지역구		계	비례	지역구
합 계	112	15	97	합 계	116	15	101	합 계	116	15	101
중 구	(7)	(1)	(6)	중 구	(7)	(1)	(6)	중 구	(7)	(1)	(6)
가선거구			3	가선거구			2	가선거구			3
나선거구			3	나선거구			4	나선거구			3
동 구	(7)	(1)	(6)	동 구	(7)	(1)	(6)	동 구	(7)	(1)	(6)
가선거구			3	가선거구			3	가선거구			3
나선거구			3	나선거구			3	나선거구			3
남 구	(17)	(2)	(15)	남 구	(16)	(2)	(14)	남 구	(16)	(2)	(14)
가선거구			3	가선거구			4	가선거구			3
나선거구			2	나선거구			3	나선거구			2
다선거구			2	다선거구			3	다선거구			2
라선거구			2	라선거구			3	라선거구			3
마선거구			2	마선거구			2	마선거구			2
바선거구			2	바선거구			2	바선거구			2
연 수 구	(9)	(1)	(8)	연 수 구	(10)	(1)	(9)	연 수 구	(10)	(1)	(9)
가선거구			2	가선거구			2	가선거구			2
나선거구			2	나선거구			3	나선거구			3
다선거구			2	다선거구			4	다선거구			4
라선거구			2	라선거구			2	라선거구			2
남 동 구	(14)	(2)	(12)	남 동 구	(16)	(2)	(14)	남 동 구	(16)	(2)	(14)
가선거구			3	가선거구			3	가선거구			3
나선거구			3	나선거구			2	나선거구			2
다선거구			3	다선거구			3	다선거구			3
라선거구			3	라선거구			3	라선거구			3
마선거구			3	마선거구			3	마선거구			3
부 평 구	(19)	(2)	(17)	부 평 구	(19)	(2)	(17)	부 평 구	(19)	(2)	(17)
가선거구			3	가선거구			4	가선거구			4
나선거구			2	나선거구			2	나선거구			2
다선거구			2	다선거구			3	다선거구			3
라선거구			2	라선거구			2	라선거구			2
마선거구			2	마선거구			3	마선거구			3
바선거구			3	바선거구			3	바선거구			3
사선거구			3	사선거구			3	사선거구			3
계 양 구	(11)	(2)	(9)	계 양 구	(11)	(2)	(9)	계 양 구	(11)	(2)	(9)
가선거구			2	가선거구			2	가선거구			2
나선거구			3	나선거구			2	나선거구			2
다선거구			2	다선거구			2	다선거구			2
라선거구			2	라선거구			3	라선거구			3
서 구	(14)	(2)	(12)	서 구	(16)	(2)	(14)	서 구	(16)	(2)	(14)
가선거구			3	가선거구			4	가선거구			4
나선거구			2	나선거구			3	나선거구			3
다선거구			2	다선거구			3	다선거구			3
라선거구			3	라선거구			2	라선거구			2
마선거구			2	마선거구			2	마선거구			2
강 화 군	(7)	(1)	(6)	강 화 군	(7)	(1)	(6)	강 화 군	(7)	(1)	(6)
가선거구			3	가선거구			3	가선거구			3
나선거구			3	나선거구			3	나선거구			3
용 진 군	(7)	(1)	(6)	용 진 군	(7)	(1)	(6)	용 진 군	(7)	(1)	(6)
가선거구			2	가선거구			2	가선거구			2
나선거구			2	나선거구			2	나선거구			2
다선거구			2	다선거구			2	다선거구			2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(제2조 관련)

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역
	계	비례	지역구	
합 계	116	15	101	
중 구	(7)	(1)	(6)	
가선거구			3	연안동, 신흥동, 도원동, 율목동, 동인천동
나선거구			3	신포동, 북성동, 송월동, 영종동, 운서동, 용유동
동 구	(7)	(1)	(6)	
가선거구			3	만석동, 화수1·화평동, 화수2동, 송림1동, 송림4동, 송현3동
나선거구			3	송림2동, 송림3·5동, 송림6동, 송현1·2동, 금창동
남 구	(16)	(2)	(14)	
가선거구			3	도화1동, 도화2·3동, 주안1동, 주안5동, 주안6동
나선거구			2	주안2동, 주안4동
다선거구			2	주안3동, 주안7동, 주안8동
라선거구			3	숭의1·3동, 숭의2동, 숭의4동, 용현1·4동, 용현2동, 용현3동
마선거구			2	용현5동, 학익1동
바선거구			2	학익2동, 관교동, 문학동
연 수 구	(10)	(1)	(9)	
가선거구			2	송도1동, 송도2동
나선거구			3	옥련1동, 옥련2동, 동춘1동, 동춘2동, 동춘3동
다선거구			4	선학동, 연수1동, 연수2동, 연수3동, 청학동

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역
	계	비례	지역구	
남 동 구	(16)	(2)	(14)	
가선거구			3	논현1동, 논현2동, 논현고잔동
나선거구			2	구월1동, 구월4동, 남촌도림동
다선거구			3	구월2동, 구월3동, 간석1동, 간석2동, 간석4동
라선거구			3	간석3동, 만수2동, 만수3동, 만수5동
마선거구			3	만수1동, 만수4동, 만수6동, 장수서창동
부 평 구	(19)	(2)	(17)	
가선거구			4	부평1동, 부평4동, 부평5동, 부개1동, 부개2동
나선거구			2	일신동, 부평2동, 부평6동
다선거구			3	부평3동, 산곡3동, 십정1동, 십정2동
라선거구			2	갈산1동, 갈산2동, 청천2동
마선거구			3	삼산1동, 삼산2동, 부개3동
바선거구			3	청천1동, 산곡1동, 산곡2동, 산곡4동
계 양 구	(11)	(2)	(9)	
가선거구			2	효성1동, 효성2동
나선거구			2	작전1동, 작전2동, 작전서운동
다선거구			2	계산1동, 계산2동, 계산3동
라선거구			3	계산4동, 계양1동, 계양2동

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역
	계	비례	지역구	
서 구	(16)	(2)	(14)	
가선거구			4	검단1동, 검단2동, 검단3동, 검단4동, 검단5동
나선거구			3	검암경서동, 청라1동, 청라2동
다선거구			3	신현원창동, 연희동, 가정1동, 가정2동, 가정3동
라선거구			2	석남1동, 석남2동, 석남3동
마선거구			2	가좌1동, 가좌2동, 가좌3동, 가좌4동
강 화 군	(7)	(1)	(6)	
가선거구			3	강화읍, 하점면, 양사면, 송해면, 교동면
나선거구			3	선원면, 불은면, 길상면, 화도면, 양도면 내가면, 삼산면, 서도면
용 진 군	(7)	(1)	(6)	
가선거구			2	북도면, 덕적면, 연평면
나선거구			2	자월면, 영흥면
다선거구			2	백령면, 대청면